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23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5. 8. 21.

판결 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4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10. 16.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71,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이 사건 2015. 8. 19.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45. 10. 1. D와 혼인하여 E, 원고, 피고, F, G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D은 1999. 6. 13. 사망하였고, C는 2014. 2. 2. 사망하였다.

나. C는 1982. 9. 13.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제530동 제1209호(이하 '1209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의 사망 후 1209호에 관하여 2014. 2. 2.자유증을 원인으로 2014. 2.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사망 무렵 시가 10억 8,500만 원인 1209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망 무렵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419,718,559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5. 14. 'C가 피고에게 1209호를 유증한 것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1209호 중 1/1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19.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가액반환을 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5. 8. 19.피고 측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6, 2-1, 2-2, 3, 8,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로부터 위와 같은 유증으로 1209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위 유증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유류분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로 위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유류분이 부족해지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A(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B(당해 유류분권자의 유
류분 비율)} - C(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D(당해 유류분
권자의 순상속액)

A(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A)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5-1~5-3, 6-1~6-4, 7-1~7-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6. 2. 12.부터 2013.
12. 6.까지 C로부터 합계 1억 7,27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1억 7,443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인정한 1억 7,273만 원을 넘어서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위 1억 7,273만 원 전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위 돈은
혼자 사는 C의 생활비, 가사도우미 비용 및 정신지체장애자인 E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두고 있다.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고, 또한 을 6-1~6-3, 7-1~7-3, 8, 9-1, 9-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장남인 E(원고의 형, 피고의 오빠)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피고 및 C가 E를 보살펴 왔던 사실,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E의 생활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최초로 수령한 1996년경에 피고는 이미 45세(1952년생)로서 독립된 가게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가 위 금액 전체를 C나 E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그 전체에 대한 관리내역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 금액 전체의 용처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에게 자신 또는 E을 돌보아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돈은 모두 증여된 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을 1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자금을 보관하던 피고를 통하여 C로부터 처인 1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2. 12. 6. 200만 원, 2013. 7. 31. 1,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인 1209호의 상속 당시 시가 10억 8,500만 원, 피고의 수증액 1억 7,273만 원 및 원고의 수증액 1,200만 원 등 합계 12억 6,973만 원에서 상속채무 419,718,559원을 뺀 850,011,441원(= 10억 8,500만 원 + 1억 7,273만 원 + 1,200만 원 - 419,718,559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가) C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상속분은 1/5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10이고, 원고의 유류분액은 85,001,144원이 된다(= 850,011,441원 × 1/10,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가 1,2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적극재산을 상속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95년경 C로부터 J 상가를 증여받거나 또는 위 상가를 매도한 대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상가 매각대금 상당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을 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1987. 7. 15. 서울 종로구 J 지상 상가 중 지하 1-40 호 23.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4. 27. K에게 위 상가를 매도하고

199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95. 8. 7. 서울 성북구 L아파트 제202동 제211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03. 12. 24. 전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2. 12. 24. 위 제202동 제211호를 매수하고, 1999.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11. 26. M에게 위 L아파트를 매도하고 2003.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년경 C가 위 J 상가를 매도하고 그 자금을 원고에게 위 L아파트 관련자금(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 거래내역이 현출되지 않는 한(피고는 1995년경 원고, 원고의 처 I, C, D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회신결과 별다른 자금 흐름이 드러나 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C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여사실에 부합하는 을 3-1~3-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유류분반환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56,944,856원(= 85,001,144원 - 원고의 수증액 12,000,000원 - (- 상속채무 부담액 83,943,712원 = 419,718,559원 × 법정상속분 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9호 중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상속개시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상당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 개시 후인 2014. 3. 20. 1209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유류분 반환 대상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분가액(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억 56,944,856원 / 상속개시 당시 1209호의 가액) × 변론종결 당시 1209호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개시 당시 1209호의 가액과 변론 종결 당시 1209호의 가액은 서로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유류분 반환액은 1억 56,944,856원이 된다.

다. 원고의 상계 주장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3. 20. 공동상속인의 상속채무인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419,718,559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원고는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부분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채권은 1억 56,944,8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이다.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속채무의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구상금 83,943,712원(= 419,718,559원× 1/5)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상계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 1억 56,944,856원 중 89,900,266원은 상계적상인 2015. 8. 19.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권 89,900,266원(83,943,712원 + 2014. 3. 20.부터 2015. 8. 19.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법정이자 5,956,554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남은 유류분 반환액은 67,044,590원(= 1억 56,944,856원 - 89,900,266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44,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표

별지 표							
순번	입금일	입금원 회고의 계좌	입금은행	원고주장	증거	금액	입정여부
1	1996-02-12		신한은행	150,000	갑 6-1, 신한은행 12. 1.자 사실조회	150,000	종여 인정
2	1996-03-12		신한은행	200,000	갑 6-1	200,000	종여 인정
3	1996-04-12		신한은행	200,000	갑 6-1	200,000	종여 인정
4	1996-05-14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5	1996-06-12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6	1996-07-12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7	1996-08-08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8	1996-09-04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9	1996-09-03		신한은행	500,000	갑 6-1	500,000	종여 인정
10	1996-10-07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11	1996-12-18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12	1997-03-14		신한은행	400,000	갑 6-1	400,000	종여 인정
13	1999-04-16		신한은행	2,000,000	갑 6-1	2,000,000	종여 인정
14	1999-08-03		신한은행	5,000,000	갑 6-1	5,000,000	종여 인정
15	2003-04-11		신한은행	700,000	갑 6-1	700,000	종여 인정
16	2004-01-12		신한은행	500,000	갑 6-1	500,000	종여 인정
17	2007-02-23		국민은행	10,500,000	갑 6-2	10,500,000	종여 인정
우리은행 계좌가 출지							
18	2008-04-10		우리은행	2,000,000	갑 6-3	2,000,000	종여인정
19	2008-06-11		국민은행	2,000,000	갑 5-1, [계좌]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20	2008-07-09		우리은행	2,000,000	갑 5-1, 우리은행 8. 28.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21	2008-08-01		우리은행	2,000,000	갑 5-1, 우리은행 8. 28.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22	2008-10-01		국민은행	1,0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1,000,000	종여인정
23	2008-10-07		우리은행	1,000,000	갑 5-1, 우리은행 8. 28. 사실조회	1,000,000	종여인정
24	2010-03-02		국민은행	7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700,000	종여인정
25	2010-05-14		국민은행	5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500,000	종여인정
26	2010-07-01		국민은행	1,5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0 [피고]에게 송금)	인정인정
27	2010-08-16		국민은행	1,0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1,000,000	종여인정
28	2010-11-26		국민은행	1,000,000	갑 5-1, 국민은행 10.31. 사실조회	1,000,000	종여인정
29	2010-03-28		우리은행	30,000,000	갑 7-1, 7-2, 우리은행 8. 29. 사실조회	30,000,000	종여인정
신한은행 계좌가 출지							
30	2008-01-29		우리은행	2,000,000	갑 5-2, 우리은행 8. 28.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31	2009-02-03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32	2009-02-27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33	2009-07-30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34	2009-09-03		신한은행	1,7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1,700,000	종여인정
35	2009-10-12		신한은행	1,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1,000,000	종여인정
36	2009-11-04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2,000,000	종여인정
37	2009-12-31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1,800,000	일부 인정, 180만 원만 입금
38	2010-02-01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여인정
39	2010-03-28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여인정
40	2010-04-12		국민은행	500,000	갑 5-2, 6-2	500,000	종여인정
41	2010-04-28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여인정
42	2010-05-30		국민은행	1,000,000	갑 5-2, 6-2	1,000,000	종여인정
43	2010-06-05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여인정
44	2010-06-25		국민은행	1,000,000	갑 5-2, 6-2	1,000,000	종여인정
45	2010-07-05		신한은행	1,000,000	갑 5-2, 6-1	1,000,000	종여인정
46	2010-10-05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여인정
47	2010-11-02		국민은행	500,000	갑 5-2, 6-2, 국민은행 10. 31. 사실조회	500,000	종여인정
48	2010-12-03		국민은행	1,700,000	갑 5-2, 6-2	1,700,000	종여인정
49	2011-02-01		국민은행	1,000,000	갑 5-2, 6-2	1,000,000	종여인정

50	2011-03-05	국민은행	920,000	갑 5-2, 6-2	920,000	종대인정
51	2012-02-27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2,000,000	종대인정
52	2012-03-27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2,000,000	종대인정
53	2012-04-20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2,000,000	종대인정
54	2012-04-30	국민은행	3,000,000	갑 5-2, 6-2	3,000,000	종대인정
55	2012-05-10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2,000,000	종대인정
56	2012-05-23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대인정
57	2012-05-25	신한은행	2,000,000	갑 5-2, 6-1	2,000,000	종대인정
58	2012-07-17	국민은행	6,000,000	갑 5-2, 6-2	6,000,000	종대인정
59	2012-07-17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대인정
60	2012-08-01	국민은행	3,000,000	갑 5-2, 6-2	3,000,000	종대인정
61	2012-08-01	국민은행	3,000,000	갑 5-2, 6-2	3,000,000	종대인정
62	2012-11-01	국민은행	5,000,000	갑 5-2, 6-2	5,000,000	종대인정
63	2012-11-29	국민은행	6,000,000	갑 5-2, 6-2	6,000,000	종대인정
64	2012-12-19	국민은행	6,000,000	갑 5-2, 6-2	6,000,000	종대인정
65	2013-01-27	국민은행	3,000,000	갑 5-2, 6-2	3,000,000	종대인정
66	2013-02-07	국민은행	2,000,000	갑 5-2, 6-2	2,000,000	종대인정
67	2013-03-25	국민은행	4,500,000	갑 5-2, 6-2	4,500,000	종대인정
68	2013-07-25	하나은행	3,300,000	갑 5-2	3,300,000	종대인정 [불분명하나, 종대로]
69	2013-08-26	국민은행	3,000,000	갑 5-2, 6-2	3,000,000	종대인정
70	2013-09-25	하나은행	2,860,000	갑 5-2	2,860,000	종대인정 [불분명하나, 종대로]
71	2013-11-26	신한은행	6,000,000	갑 5-2, 6-1, 6-4, 신한은행 9, 16, 사실조회 12, 5, 사실조회	6,000,000	종대인정
72	2013-11-26	하나은행	4,000,000	갑 5-2	4,000,000	종대인정 [불분명하나, 종대로]
					172,790,000	